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4,322,556	15,129,677
일반회계	437,500,411	13,125,012
특별회계	66,822,145	2,004,664
공기업특별회계	14,584,607	437,5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84,607	437,538
기타특별회계	52,237,538	1,567,1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8,999	38,070
자활기금특별회계	2,012,286	60,36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158,402	154,7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363	341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8,553	7,457
기반시설특별회계	438,178	13,14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3,739	10,612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52,493	25,575
주택사업특별회계	2,139	64
수질개선특별회계	41,891,386	1,256,7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633,3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